

광주지방법원 2021. 6. 25 선고 2021가단124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6. 11.

판 결 선 고 2021. 6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나주시 C 임야 12,926㎡ 중 원고의 1/5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4. 8. 16. 제19542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 정영호

별지